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4-16호
2024. 3. 22.(금)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고시 제2024-38호) 1

공 고(2)

- 수용계결신청서 열람공고(공고 제2024-318호) 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제2024-329호) 3

입법예고(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338호) 9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339호) 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340호) 25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342호) 3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343호) 3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345호) 4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350호) · 52

행정예고(2)

- 공영주차장 명칭 부여 행정예고(공고 제2024-324호) 57
- 2024년 CCTV 추가 설치 공사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4-333호) 61

공 램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 ☎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38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상서동 828-1	덕암로152	건물신축	행정구역명(덕암동)을 반영	2024. 3. 22.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4)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http://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대전광역시·계룡산업(주)로부터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 개발행위 특례사업, 5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사업 명: 용전근린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 특례사업)
-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계룡산업(주)
- 열람 기간: 2024.3.22. ~ 2024.4.5.
-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처
 - 대덕구청 공원녹지과(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500), ☎ 042-608-5112
- 의견제출기간: 2024.3.22. ~ 2024.4.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156-1 (1,000㎡)
 - 토지(물건)소유자: 조용태(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97번길 58)
 - 관계인: 송동호(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33번길 18 201호)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156-1 고철 및 비철 등 총 3건
- 기 타: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 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불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2024. 3. 22. ~ 2024. 4. 4. (14일간)
4. 기타
 - 가.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 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노인장애인과(☎042-608-6804, 6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명단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유**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1004-26, 2**호(홍도동)	87부83**	2024-01-07 10:03:26	중리동 418	2024.02.20	2024.02.28	폐문부재
2	강**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10번길 130, 102동 6**호(덕암동, 삼호아파트)	03부60**	2024-01-09 19:31:31	신탄진동 118-4	2024.02.20	2024.02.22	폐문부재
3	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2번길 2**(읍내동)	29고47**	2024-01-10 19:26:43	신탄진동 118-5	2024.02.20	2024.02.22	폐문부재
4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66-1, 2**호(논현동)	269수96**	2024-01-06 15:23:39	송촌동 444	2024.02.20	2024.02.23	폐문부재
5	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3, 109동 13**호(신탄진동, 동일스위트리버스스카이1단지)	19나60**	2024-01-07 04:38:44	신탄진동 771	2024.02.20	2024.02.22	폐문부재
6	김*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882번길 84, 2**호(오류동)	55구11**	2024-01-08 08:54:21	오정동 44-1	2024.02.20	2024.02.23	폐문부재
7	이**	세종특별자치시 밝은뜰로 15, 1912동 12**호(고운동, 가락마을19단지)	36무09**	2024-01-09 08:04:50	평촌동 100	2024.02.20	2024.02.22	폐문부재
8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23번길 37, 105동 8**호(송촌동, 서오아파트)	199어89**	2024-01-10 09:48:59	송촌동 525	2024.02.20	2024.02.22	폐문부재
9	주식회사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송신길 **	377라12**	2024-01-10 16:17:17	비래동 4-1	2024.02.20	2024.02.21	이사불명
10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74번길 25-17, 2**호(중리동)	373거56**	2024-01-12 21:54:28	송촌동 459-3	2024.02.20	2024.02.22	폐문부재
11	양**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185번길 30, 102동 14**호(오정동, 양지마을아파트)	282오37**	2024-01-13 12:56:37	오정동 55-5	2024.02.20	2024.02.22	폐문부재
12	임**	세종특별자치시 대평1길 38, 306동 7**호(대평동, 해들마을3단지)	815보47**	2024-01-13 21:57:49	비래동 118-3	2024.02.20	2024.02.29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3	송**	대전광역시 동구 새울로81번길 19, 4**호(용운동)	11조16**	2024-01-14 18:00:35	비래동 18-21	2024.02.20	2024.02.28	폐문부재
14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10동 15**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81모04**	2024-01-16 05:20:03	송촌동 494-1	2024.02.20	2024.02.22	폐문부재
15	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 103-**	68수04**	2024-01-16 10:05:02	송촌동 461-1	2024.02.20	2024.02.21	폐문부재
16	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2번길 2**(읍내동)	29고47**	2024-01-17 19:43:29	신탄진동 118-5	2024.02.20	2024.02.22	폐문부재
17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16번길 **(송촌동)	35소51**	2024-01-18 19:55:09	중리동 462	2024.02.20	2024.02.22	폐문부재
18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02동 21**호(석봉동, 금강엑셀루타워)	45가42**	2024-01-19 07:50:25	석봉동 770	2024.02.20	2024.02.22	폐문부재
19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96번길 45, 2**호(노은동)	49거77**	2024-01-22 08:57:10	대화동 39-1	2024.02.20	2024.02.26	폐문부재
20	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10동 36**호(석봉동, 금강엑셀루타워)	37너27**	2024-01-22 23:23:47	석봉동 770	2024.02.20	2024.02.22	폐문부재
21	주식회사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송신길 **	377라12**	2024-01-24 17:06:00	비래동 3-2	2024.02.20	2024.02.21	이사불명
22	마**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3번길 75, 4**호(만년동)	146오30**	2024-01-27 18:04:08	송촌동 494-1	2024.02.20	2024.02.27	폐문부재
23	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2, 4동 8**호(법동, 삼호아파트)	17더72**	2024-01-25 08:00:16	법동 280-2	2024.02.20	2024.02.22	폐문부재
24	서**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234, 304동 4**호(도안동, 트리플시티레이크포레)	391조99**	2024-01-28 10:10:36	송촌동 525	2024.02.20	2024.02.27	폐문부재
25	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3, 101동 10**호(장대동, 드림월드아파트)	187러54**	2024-01-30 12:34:02	오정동 500	2024.03.06	2024.03.12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26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 106동 14**호(법동, 한마음아파트)	80보99**	2024-02-13 14:56:17	석봉동 415-14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27	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21번길 16, 2**호(선화동)	26주36**	2024-02-14 20:35:58	송촌동 447-4	2024.03.06	2024.03.08	수취인 불명
28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114번길 60, 311동 11**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59가56**	2024-02-19 22:18:24	송촌동 461-1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29	양**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394, 1동 10**호(비래동, 현대아파트)	46주86**	2024-02-01 07:56:04	비래동 47-1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30	윤**, 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01동 13**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19나68**	2024-01-29 12:35:08	송촌동 494-1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31	박**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114, 1105동 5**호(용산동, 11단지아파트)	169하78**	2023-12-30 21:22:12	신탄진동 771	2024.03.06	2024.03.12	폐문부재
32	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422, 108동 16**호(원신흥동, 갑천1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165허31**	2024-01-07 16:34:55	석봉동 177-2	2024.03.06	2024.03.12	폐문부재
33	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422, 108동 16**호(원신흥동, 갑천1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165허31**	2024-01-28 11:27:27	석봉동 177-2	2024.03.06	2024.03.12	폐문부재
34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동로15번길 30, 101동 1**호(비래동, 유엔미아파트)	155라94**	2024-01-27 11:12:28	비래동 116-2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35	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64번길 11, 103동 5**호(신탄진동, 라이프새마을아파트)	258부58**	2024-02-06 20:01:37	신탄진동 118-5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36	임**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북로 13, 411동 12**호(새롬동, 새뜸마을 4단지)	135구56**	2024-02-07 21:22:13	석봉동 787	2024.03.06	2024.03.13	폐문부재
37	이**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옥지로 39**	97구02**	2024-02-08 12:46:04	비래동 539	2024.03.06	2024.03.07	폐문부재
38	이**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384, 107동 9**호(동패동, 운정신도시 IPARK)	67두48**	2024-02-11 18:04:52	석봉동 177-2	2024.03.06	2024.03.07	수취인 불명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39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동로15번길 30, 101동 1**호(비래동, 유엔미아파트)	155라94**	2024-02-18 11:33:43	비래동 116-2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40	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로 19, 203동 15**호(해운동, 두산아파트)	18거06**	2024-02-07 14:37:52	상서동 828-15	2024.03.06	2024.03.07	폐문부재
41	방**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3, 111동 25**호(신탄진동,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1단지)	165노12**	2024-02-08 16:15:22	신탄진동 771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42	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11로 80, 103동 5**호(신방동, 천안신방내 1단지아파트)	190조77**	2024-02-09 08:51:18	중리동 418	2024.03.06	2024.03.11	폐문부재
43	신**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70번길 22, 2**호(덕암동, 영창빌라)	40저79**	2024-02-17 16:01:09	미호동 57-1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44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96번길 45, 2**호(노은동)	49거77**	2024-01-29 11:22:48	대화동 39-1	2024.03.06	2024.03.12	폐문부재
45	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신학동길 **	15버81**	2024-01-30 07:56:56	비래동 47-1	2024.03.06	2024.03.07	폐문부재
46	신**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로 56, 507동 23**호(대평동, 해들마을5단지)	26루44**	2024-02-02 06:36:43	법동 440-4	2024.03.06	2024.03.15	폐문부재
47	정**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1307번길 ***(정림동)	141모30**	2024-02-03 13:51:39	신일동 1684-39	2024.03.06	2024.03.13	폐문부재
48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96번길 45, 2**호(노은동)	49거77**	2024-02-06 10:30:19	대화동 39-1	2024.03.06	2024.03.12	폐문부재
49	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91번길 5, 4**호(농서동)	33우54**	2024-01-31 08:29:04	송촌동 494-1	2024.03.06	2024.03.08	이사불명
50	박**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반2길 5, 3**호(덕진동2가)	126너21**	2024-02-06 19:04:00	신탄진동 771	2024.03.06	2024.03.14	폐문부재
51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서로 31, 101동 2**호(중리동, 영진로얄아파트)	375로75**	2024-02-10 19:31:33	중리동 275-30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52	양**	대전광역시 서구 문제로 16, 1동 1**호(탄방동, 한가람아파트)	168고24**	2024-02-11 14:34:38	송촌동 460-2	2024.03.06	2024.03.13	폐문부재
53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5, 408동 8**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59다50**	2024-02-12 16:46:06	송촌동 462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54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북로12번길 19, 14**호(석봉동, 세울더레스트 2차)	18주09**	2024-02-13 13:41:03	석봉동 751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55	김**	경상남도 사천시 수도골길 ***(동림동)	66버50**	2024-02-14 13:27:25	중리동 410-2	2024.03.06	2024.03.08	주소불명
56	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11번길 84, 4**호(중리동)	60마31**	2024-02-15 07:42:27	중리동 412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57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12동 13**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01너93**	2024-02-17 09:47:44	송촌동 494-1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58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60, 312동 7**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60거10**	2024-02-17 10:55:45	송촌동 461-1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59	권**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60, 302동 1**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65루97**	2024-02-16 20:19:42	송촌동 461-1	2024.03.06	2024.03.08	폐문부재
60	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574번길 36, 2**호(중리동)	113다25**	2024-02-20 08:19:45	중리동 412	2024.03.06	2024.03.07	이사불명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33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책무 및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 금고 평가 기준 및 협력사업비 공개 규정을 보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책무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나.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평가기준 등을 금융기관에게 교부·열람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선함(안 제5조).

다. 협력사업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세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원관리과

(전화 : 042-608-6681, FAX : 042-608-3827, E-mail : imksyeon@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원관리과 담당자 김소연(전화 : 042-608-66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이나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책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참석 또는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제2항 중 “열람하게 할 수 있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을 “출연토록 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를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p> <p>1. 위원이 해당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p>

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이나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위원의 책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참석 또는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p>제5조(지정절차) ① (생략)</p>	<p><u>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u></p>
<p>② 구청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u>열람하게 할 수 있다.</u></p>	<p>제5조(지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 ⑤ (생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등)</p> <p>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u>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u></p>	<p>제9조(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등)</p> <p>① ----- ----- <u>출연토록 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u>-- -.</p>
<p>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u>공개</u>하여야 한다.</p>	<p>② ----- ----- ----- <u>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u>-- -.</p>
<p>③ ~ ⑤ (생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 1. ~ 5. (생략)
- ②·③ (생략)
-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 1. ~ 4.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칙

[1] ~ [4] (생략)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생략)

2. 금고지정방법 (생략)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생략)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생략)

[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

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생략)

4. 금고의 지정절차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생략)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라. (생략)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 [5] (생략)

5. 금고약정 및 해지 (생략)

6. 보칙

[1] (생략)

[2]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3] (생략)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33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폭염특보 발령 기준 관련 「기상법」 개정사항 및 인용조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폭염, 폭염특보 및 폭염취약계층 정의에 대해 정비함(안 제2조).
- 나.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
(전화 : 042-608-5353, FAX : 042-608-3849, E-mail : hwikeun123@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총괄과 담당자 김휘근 (전화: 042-608-53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특보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제2조제5호(중전의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목(중전의 마목) 중 “야외근로자 등 대전광역시”을 “대전광역시”으로 한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제10조 중 “폭염경감시설”을 “폭염저감시설”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특보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신 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2.·3. (생 략)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삭 제>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삭 제>
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삭 제>
만. 그 밖에 <u>야외근로자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나. ----- 대전광역시----- ----- -----
제10조(위탁) 구청장은 <u>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u> 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 폭염저감시설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의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34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연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요청에 따라 장제·유족 보상 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확인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가. 단장, 부단장, 간사에 대한 연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5항).

나. 재해 보상청구서 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장제·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를 삭제함(안 별지 제9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안
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
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
(전화 : 042-608-5352, FAX : 042-608-3849, E-mail : joohey43@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총괄과 담당자 김주희
(전화 : 042-608-53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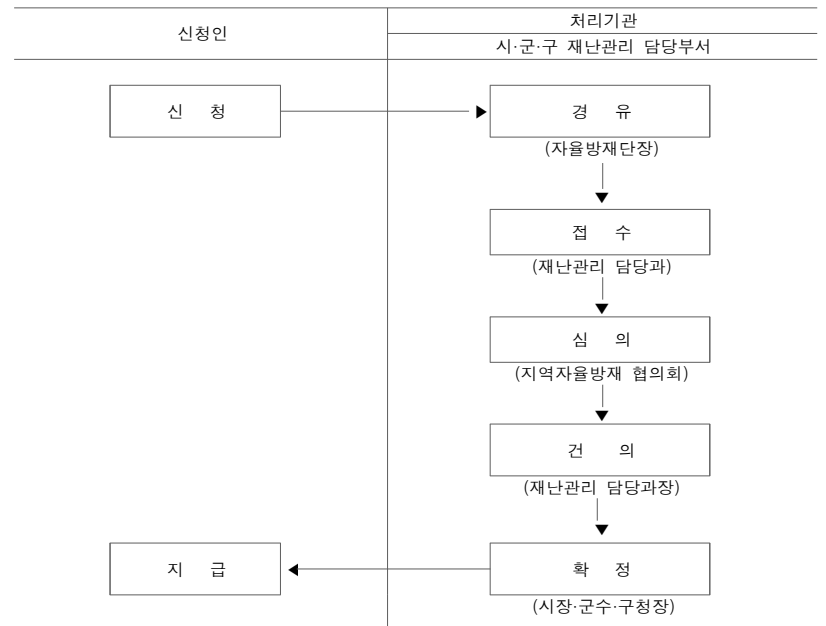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제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 ④ (생략) ⑤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신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서 삭제> ⑥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4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정비함(안 제4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전화 : 042-608-6622, 팩스 : 042-608-3824,

이메일 : tax8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 담당자 이충은(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 ----- ----- ----- ----- ----- ----- ----- ----- ----- ----- ----- -----
②·③ (생략)	--- 45만원 ----- ----- ----- ②·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9.>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기획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획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5조의 2 신설).
-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정비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전화 : 042-608-6622, 팩스 : 042-608-3824,
이메일 : tax8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 담당자 이충은(전화 : 042-608-66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u>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u>
제7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u>건축물</u> 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직접 사용의 범위) ----- ----- ----- ----- <u>건축물 및 주택</u> ----- -.

관계법령

□ 지방세특별제한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

- 가. 공장을 신설·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34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불부합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인용조문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정비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

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감사실

(전화 : 042-608-6032, FAX : 042-608-3812, E-mail : tax7352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실 담당자 김정기(전화 : 042-608-60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 청장은 신고 대상자의 비위행위 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 칙」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 -----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직무상 비위 사실이 있는 자 등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 직무상 비위 사실이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 042-608-6043, FAX : 042-608-3811, E-mail : ejan368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제1항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최재희 (전화 : 042-608-6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5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324호

공영주차장 명칭 부여 행정예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읍내동 대덕문화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하여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명칭을 부여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읍내동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명칭 부여
2. 행정예고 목적: 읍내동 대덕문화원 인근에 조성하는 「읍내동 공영주차장」 명칭 부여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영주차장 명칭

공영주차장명	위 치	주차면	형태	비고
읍내동 공영주차장	읍내동 317-9번지 일원	30	노외	

※ 주차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1]

6. 행정예고 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 및 게시판
7. 행정예고 기간: 2024.03.22. ~ 2024.04.11. (21일간)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2024.03.22. ~ 04.11.)내에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대덕구 교통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2024.03.22. ~ 2024.04.11. (21일간)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 전 화: 042)608-5294 / FAX: 042)608-3845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붙임2) 의견제출서 1부.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2) 의견제출서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333호

2024년 방범용 CCTV 추가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예방 인프라를 조성하고 신속한 범죄대응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관내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히 대응코자함

4. 설치장소: 방범용(4개소 / 6대) 【첨부1】

5. 촬영범위 및 시간: CCTV설치 구역 반경 50m, 24시간 연속 촬영

6. 예고기간: 2024. 3. 22. ~ 2024. 4. 11.(20일간)

7.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 4. 11.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첨부2】 참조
-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 대덕구청 민원정보과(☎ 042-608-6097 fax 042-608-3939)

【첨부1】

대덕구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장소

연번	위 치	개소	대수		비고
			회전	고정	
계	4개소 6대	4	4	2	
1	우암로476번길	1	1	0	
2	석봉동 781 공원	1	1	2	
3	미호동432-4 (미호만남공원)	1	1	0	
4	석봉북로15 (함께하는교회앞3거리)	1	1	0	

【첨부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대전 대덕구 방법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방법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끝.